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김효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04호)

2026. 2.

교육안전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904호
- 발 의 자 : 김호숙 의원 외 13명(김동빈, 김영현,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박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의원)
- 발의일자 : 2026년 1월 16일
- 회부일자 : 2026년 1월 19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낮아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장거리 통학 등에 대한 지원기준 추가(안 제5조제7호)
- 실태조사 실시의 의무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 통학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사회보장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붙임3)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4)
-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붙임5)

## Ⅲ. 검토의견

### 1. 개정목적

-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 장거리 통학 등에 대한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의무화, 통학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사항임

### 3. 검토의견

- 통학 지원 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고려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통학지원 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 기존의 포괄적인 지원 계획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통학 취약 지역(장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낮은 경우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기존의 임의 규정이던 실태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변화하는 통학 여건을 적기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평가되며,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는 단서를 두어 운영의 유연성 또한 확보하고 있으나
  - 정확한 현황 파악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실제 실태조사 시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학교장이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 이는 실제 학교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통학 지원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종합해봤을 때, 본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 다만, 통학 문제는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과 연계되어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 더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붙임 1. 개정조례안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현행조례

문 의 처
044)300-75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건을”을 “여건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로,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선정기준

제5조제1항제7호 중 “그”를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태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호 중 “대상 선정”을 “대상 및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법”을 “방법 및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학교의 장

제10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계기관”을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필요하거나 통학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초·중등교육법</u>」 제60조의1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초·중등교육법</u>」 제60조의12----- ----- ----- ----- -----.</p>
<p>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u>마련하여야</u> 한다.</p> <p>③ (생략)</p>	<p>제3조(책무) ① ----- ----- ----- ----- 노력해야 -----.</p> <p>② ----- ----- ----- 마련해야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p>	<p>제4조(지원계획) ----- <u>여건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u> -----</p>

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제5조(지원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학생들의 통학현황(거주지역, 수단, 소요시간 등), 통학 지원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수립·시행해야 -----.

1. (현행과 같음)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선정기준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조(지원기준)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그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  
-----  
-----  
-----  
실시해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 5. (생략)

<신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② (생략)
-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세종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  
-----  
-----  
-----  
-----.

1. ----- 대상 및 선정기준
2. ----- 방법 및 기간-----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5. (현행과 같음)

6. 학교의 장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회피해야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특별자치시, 관계기관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학 지원이 필요하거나 통학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 ---.

**관 계 법 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효 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2024. 6. 2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53호, 2024. 6. 28., 타법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재무행정과), 044-320-3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3. “통학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통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인근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학생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

6.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7.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유로 지원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학생들의 통학현황(거주지역, 수단, 소요시간 등), 통학 지원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6.28.>

③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도로 및 교통 분야 전문가
3. 세종경찰서장이 추천하는 도로 및 교통 분야 전문가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
5. 학생 안전 또는 도로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학지원을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통학차량 운영 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